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정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8 발의연월일: 2024. 5. 30.

발 의 자:김정재・이상휘・이달희

박대출 · 김기현 · 박덕흠

윤한홍 · 서일준 · 김성원

박충권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 제11조의2에서는 학교의 신청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통해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예외적으로 의학·치의학·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인정기관의 평가·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.

한편, 「의료법」 제5조 및 제7조에서는 의사·치과의사·한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시험의 응시자격으로 현행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·치의학사·한의학사 또는 간호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 제한하고 있음.

이에 대학이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전에 그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인증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학 등의 교육과정을 개 시하려는 대학은 운영 개시 예정일 1년 6개월 전부터 운영 개시 예정 일 1년 3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인정기관에 평가인증을 신청하도록 「고등교육기관의 평가·인증 등에 관한 규정」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음.

하지만 상위법인 「고등교육법」과 「의료법」으로 규정되어 있는 제도를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으로 규정함에 따라 법 체계에 맞지 않 아 법령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(안 제11조의2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정재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」 (의안번호 제19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 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2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제5항) 중 "인증, 제3항의"를 "인증·예비인증, 제4항의"로, "제4항의평가"를 "제5항의 평가"로 한다.

이 경우 의학·치의학·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는 해당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전에 교육과정 운영 계획서 등을 근거로 예비인증을 할 수 있다.

③ 의학·치의학·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·인증을 받아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1조의2(평가 등) ① (생 략)	제11조의2(평가 등) ① (현행과		
	같음)		
②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	②		
은 기관(이하 이 조에서 "인정			
기관"이라 한다)은 학교의 신			
청에 따라 학교운영의 전반과			
교육과정(학부・학과・전공을			
포함한다)의 운영을 평가하거			
나 인증할 수 있다. <u>다만, 의학</u>	<u><단서 삭제></u>		
·치의학·한의학 또는 간호학	<u>이 경우 의학·치의학·한의학</u>		
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	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		
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	정을 운영하려는 학교는 해당		
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	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전에 교육		
평가・인증을 받아야 한다.	과정 운영계획서 등을 근거로		
<u><후단 신설></u>	예비인증을 할 수 있다.		
<u><신 설></u>	③ 의학・치의학・한의학 또는		
	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		
	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		
	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		
	의 평가 • 인증을 받아야 한다.		
<u>③</u> · <u>④</u> (생 략)	<u>④</u> ・ <u>⑤</u> (현행 제3항 및 제4항		
	과 같음)		
<u>⑤</u> 제2항의 평가 또는 <u>인증, 제</u>	<u>⑥</u> <u>인증·</u>		

<u>3항의</u> 인정기관의 지정과 <u>제4</u>	<u> 예비인증, 제4항의</u>
<u>항의 평가</u> 또는 인증 결과의	<u>제5항의 평가</u>
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	
령으로 정한다.	<u>.</u>